

운용관리계약서 변경대비표

구분	현행	변경(안)	비고
DC	[본문] -부칙- 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 [부속협정서] 제3조 (수수료의 징수)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다만,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 1. ~ 9. (생략) 10.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강소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(중복적용 불가) 단,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(신설) ② 제2조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(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)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	[본문] -부칙- 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 [부속협정서] 제3조 (수수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9. (생략) 10. (현행과 같음) 11.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,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3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(제10호의 할인과는 중복적용 불가) 단,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확인을 위하여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증빙서류를 징구하며,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것이 확인 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② (현행과 같음)	시행일 변경 30인 미만 DC법인 온라인 업무처리시 수수료 30% 할인 적용

구분	현행	변경(안)	비고
기업형 IRP	[본문] -부칙- 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 [부속협정서] 제3조 (수수료의 징수)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다만,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 1. ~ 9. (생략) 10.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강소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(중복적용 불가) 단,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(신설)	[본문] -부칙- 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 [부속협정서] 제3조 (수수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9. (생략) 10. (현행과 같음) 11.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,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3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(제10호의 할인과는 중복적용 불가) 단,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확인을 위하여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증빙서류를 징구하며,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것이 확인 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	시행일 변경 30인 미만 기업형IRP 법인 온라인 업무처리시 수수료 30% 할인 적용